검찰개혁법안(정부 · 여당안)
30문 30답

2026. 03. 11.

– 검찰개혁추진협의회 –

〈 목차 〉

1. 국민의 비판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치열한 논쟁 없이 당론을 정한 뒤, 수정이 안된다? · 4

2. 검찰개혁추진단을 대부분 '검찰' 인원으로 구성해 놓고, 무슨 검찰개혁을 한다는 것인지? 6

3.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간판갈이'만 하여,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는 법안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 7

4. 지금의 검찰청보다도 공소청의 권한이 더 커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 8

5. 검사의 직무상 영장 청구 지휘권이 신설된 것 아닌지? ····· 9

6. 검사의 직무상 특사경 수사지휘권 존치로, 우회적 수사권 확보가 가능해지고, 대통령 지시에도 반하는 것 아닌지? ····· 10

7. 검사의 직무상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해, 우회적으로 공소청에 수사권을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닌가? ····· 11

8. 검사에 대한 통보 의무, 입건요청권 등을 통해 공소청이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확보하려는 것 아닌지? ····· 12

9. 공소청이 과거처럼 인력·예산을 하나도 줄이지 않으면서 수사기능을 복원하려는 것 아닌지? ····· 13

10. 공소청법 시행 시점에 수사중인 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모두 수사기관으로 보내는 것이 맞지 않는지? ····· 14

11. 검사의 정원·보수·징계 관련 법률은 검찰의 특권의식에 기반한 것이 아닌지? ····· 15

12. 공소청의 3단계 구조가 왜 필요한지? ····· 16

13. 검찰청의 인적 구성이 그대로 공소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 17

14.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는데? ····· 18

15.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한 것은 검사동일체의 근원? ····· 19

16. 검사 직무의 위임 이전 및 승계 조항을 그대로 옮긴 것은 기존 제왕적 검찰총장제 남용의 우려가 있지 않은지? ····· 20

17. 공소청법안이 법무부 탈검찰화에 역행하는 법이다? ····· 21
18. 여권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은 예외없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보완수사권 인정을 전제로 의견수렴 등 여론을 형성하는 것 아닌지? 22
19. 형사소송법 개정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수사권이 인정되는 것 아닌지? ····· 23
20. 형사소송법 개정을 안 하면 검찰개혁은 한 발도 못 나가는 것 아닌지? ····· 24
21.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를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닌지? ····· 25
22. 중수청 수사범위에 사이버범죄가 포함될 경우, 그 수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괴물 중수청이 되는 것 아닌지? ····· 26
23.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권을 모두 갖고, 별건수사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27
24. 공소청 공무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는 등, 공소청에 대한 견제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지? ····· 28
25. 중수청에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여, 모든 수사기관의 상위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것 아닌지? ····· 29
26. 타 수사기관이 중수청에 입건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여, 중수청에서 사건을 선별해 우선수사하도록 하고, 공소청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 30
27. 중수청의 수사개시 통보를 통해, 공소청이 모든 수사기관 혹은 수사를 통제? ····· 31
28. 검사와의 관계 조항을 통해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지휘? ····· 32
29. 중수청법 부칙상 검사 임용특례규정이 이원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 33
30. 중수청법안 부칙 제4조제6항에 봉급 보전조항은 검사가 수사관으로 임용되었을 때 차이 보전하려고 넣은 것? ····· 34

1. 국민의 비판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치열한 논쟁 없이 당론을 정한 뒤, 수정이 안된다?

*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이 확정되고 많은 비판이 쏟아졌는데, **당론이므로 수정이 안된다는 당관계자의 발언에 실망을 금할 수 없음. 국민의 비판이 옳은지 그른지 제대로 따지지도 않는 불관용의 자세**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에 의한 정치의 배반. 솔직히 **2차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 당론 채택 여부를 위한 의총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체계와 자구 하나하나 놓고 면밀하게 토론했어야 하는 법안인데 **의총에서 통째 수용을 거수로 정한 것은 부적절**

□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수차례에 걸친 고위 당정협의**와 **당·정·청 간 논의**를 통해, **당 의견과 국민의 비판을 최대한 수용하고 검토**하여 만들어진 안임

ㅇ (**추진방향**) 작년 9.7일, 고위당정을 통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조직법 先처리 후 형소법 논의 등 추진방향**이 결정되었으며,

ㅇ 이후 **정부 입법예고안과 재입법예고안 모두 당정협의 과정**을 통해 마련된 것임

- (**입법예고 과정**) 올해 1월, 정부안 입법예고에 앞서 **법사위원장 및 여당간사, 당 대표 등 당 지도부**에게 정부안에 대해 사전 설명
- (**재입법예고 과정**) 이후에도 **총 5차례의 의원총회**와 **공청회, 당정협의**(2.10일)를 거쳐 수렴한 당의 의견에 따라 정부안을 수정*하였고,

※ ▲1.15일 / 1.22일 / 2.5일 / 2.22일 의원총회 ▲1.20일 공청회 등

- 특히 **2.22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부 재입법예고안을 만장일치 채택**함에 따라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참고 정부안 재입법예고안 중 당 의견 반영 현황

구분	당초 입법예고(안)	재입법예고(안)
① 수사대상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9대 범죄**	▲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와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 ▲ **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 제외** ▲ 사이버범죄는 시행령에서 구체화
② 인력체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구분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5급 이상 전문수사관 중 시험을 거쳐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한 자로 자격 제한 ▲전문수사관의 계급은 1~9급으로 구성	▲**수사관** 1~9급의 **단일직급체계**
③ 중수청장 자격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 소지자** 또는 15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수사사법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15년 이상 수사 및 법률 업무 종사자도 가능
④ 검사 신분 보장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파면**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 ▲검사는 탄핵,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또는 징계로도 파면
⑤ 공소청 기관장 명칭	▲**'검찰총장' 명칭 유지**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함' 등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당 의견 있었으나, **위헌소지 등 논란 최소화** 위해 정부안 유지

※ 이외 ▲검사의 사법경찰 임용권자에 대한 교체임용요구를 소속기관장에 대한 직무배제요구로 수정하고, ▲상급자 지휘·감독에 대한 검사의 이의제기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 또는 대우 금지를 명문화하며, ▲공소청 직원 규정 중 국민권리와 직접 관계 없는 통역기술 공무원 등은 삭제하는 등 추가개선필요사항도 반영

▲ 당은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정리'하는 입장을 냈으나, 형소법 단계에서 논의하기로 旣합의

2. 검찰개혁추진단을 대부분 '검찰' 인원으로 구성해 놓고, 무슨 검찰개혁을 한다는 것인지?

* 현재 총리 산하 추진단에 검사와 수사관이 주도적으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검찰의 꼼수

* 추진단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국과장이 전부 현직 검사로 구성돼 있고, 실무진도 검찰 수사관들이다. 절반에 가까운 인력이 검찰에서 나와있다.

□ 검찰개혁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대개혁**으로, 이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사 시스템과 사건 처리 절차, 조직 운영 실무를 가장 잘 아는 현장 인력의 경험**이 필수적

○ **추진단**도 이러한 배경을 반영하여, 검찰 인력 외에 법원, 행안부, 법제처, 인사처, 경찰청 등 **다양한 부처 출신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추진단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관계 부처의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구성한 것임

○ **이전 정부의 검찰개혁**이 **법무부 내 추진단**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정부의 검찰개혁은 **범정부 추진단**을 통해 **정부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투명하고 균형감 있게 추진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음

◆ **<참고>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추진체계**

- **법무부 산하**에 **민간이 참여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
- 법무부 장관 직속기구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실무진)

☞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하여 실무적인 부분을 뒷받침

3.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간판갈이'만 하여,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는 법안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 정부의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을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꾼 수준**이고 심지어는 **기존보다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검찰청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정부는 기존 **검찰의 권력 집중과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공소청을 신설하는 취지**를 살려, 공소청법에 이를 구현하고자 했음

구분	현행 「검찰청법」	공소청법(안)
검사 직무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경제범죄 등 / 나. 수사기관 공무원 범죄 / 다. 관련 인지 범죄	**1.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신 설>	**2. 영장 청구·집행 지휘**
	<신 설>	3.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4.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5.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6.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7.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신 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법령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사항**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사건 심의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예규)	**고등공소청**에 사건심의위를 두도록 **공소청법상에 법제화**
적격 심사 개선	제39조(검사 적격심사)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4.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5.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	제47조(검사 적격심사) ② 제1항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6명**으로 구성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4.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5.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근평 제도 개선	제35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② 제1항의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3조(근무성적 등의 평정) ② 제1항의 평정기준 중 근무성적 평정기준에는 **제63조에 따른 항고·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裁定申請)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치 관여죄 신설	<신 설>	제65조(**정치 관여죄**) 검사가 제51조제1호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징계 파면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제45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4. 지금의 검찰청보다도 공소청의 권한이 더 커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 새로 출범할 공소청은 지금의 검찰보다 힘이 더 센 기관이 될 수 있음. **정부는 수사기관의 전건송치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주장**하고 있음. **이것이 모조리 인정되면** 지금의 검찰보다 더 강력해질 것임

* **보완수사가 인정되고 전건송치까지 가지게 되면** 검사들의 권한은 현재보다 더 커질 것임

□ 정부는 **전건송치와 보완수사를 주장한 바 없으며,**

ㅇ 정부안 어디에도 전건송치 또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거나 전제로 하는 규정이 없음**

□ 검찰권 행사에 대한 비판은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을 직접 기소한 데에서 오는 **수사·기소 결합**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정부안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였음

ㅇ 수사·기소 분리 원칙 하에, **공소청은 더 이상 수사 개시를 할 수 없으므로 예전과 같은 검찰권 행사는 더 이상 불가능함**

□ 검사가 **중수청을 이용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가정에 기반한 것임**

ㅇ 공소청과 중수청은 지휘·감독 관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로 소속을 완전히 분리**하여 각 부처에서 인사와 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검사가 중수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

□ 직접 수사 기능 폐지·조직 분리로 인해 **공소청의 권한이 약화**됨에 따라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여야 할 때임

ㅇ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이 오히려 **사법통제의 공백**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검토와 숙의를 거쳐 제도를 정밀히 마련해야 함

5. 검사의 직무상 영장 청구 지휘권이 신설된 것 아닌지?

* 기존 실무상 영장 청구는 수사기관의 고유 판단 영역이었으나, **'영장 청구·집행 지휘' 조문의 문언 해석상 '지휘'의 범위가 '영장 청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될 경우, **전례 없는 '영장청구 지휘권'이 신설**되어 수사기관에 대한 **우회적 수사지휘 수단**으로 악용될 것임

□ 해당 조항은 **'영장 청구권'과 형사소송법상 '영장 집행 지휘권'이라는 개별적 권한을 나열**한 것으로, **영장 청구 지휘권을 신설한 것은 아님**

<공소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2. 영장 청구·집행 지휘

○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위 조문 문구를 '영장 청구·영장 집행 지휘'로 변경 가능

6. 검사의 직무상 특사경 수사지휘권 존치로, 우회적 수사권 확보가 가능해지고, 대통령 지시에도 반하는 것 아닌지?

* 공소청법안에 의하면 수사-기소 분리는 절반의 분리에 그쳤음. **특사경에 대해서는 검사가 여전히 수사지휘.** 특사경이 수사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검사가 지휘해야 한다는 것.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서 금감원이 이를 인지하고 독자적인 수사권한이 있었다면 김건희 등 검사 윤석열을 뒷배로 둔 주가조작범 일당은 검거될 수 있었을 것임. 또한 **금감원 금융위에 수사권한을 주라는 대통령 지시에도 반함**
* **경찰과 중수청에 대한 수사지휘는 인정하지 않으며 특사경은 지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수사-기소분리 원칙에 어긋남**
* 특사경 지휘·감독권 인정 시 **검사가 특사경을 지휘해서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있음

□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인 특사경은 일반 사경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특사경 지휘·감독은 검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특사경에 법리적 가이드를 제공**하고, **수사 과정상 인권 침해 요소를 감독·시정**하기 위함이며, 수사권 행사와 무관함

ㅇ 수사지휘권은 **수사권과 별개의 개념**으로 '수사통제'의 문제, **학계**와 **특사경 관계부처***들도 대부분 특사경에 대해 **일정 부분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 지식재산처·식약처·기후환경에너지부·농식품부 등

□ 대통령의 '금감원 특사경 수사권한 확보' 타당성 검토 말씀은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할지*의 문제이며, 검사의 지휘·감독과는 무관함

* 검사의 지휘감독권과 별개로, 금감원은 금융위 훈령으로 인해 인지수사 불가

※ **박은정 의원안은 '범죄수사에 관한 특사경 지휘·감독'을, 민주당 특위안은 '특사경 지도·협의'를 규정**

7. 검사의 직무상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해, 우회적으로 공소청에 수사권을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닌가?

* 공소청법상 검사의 직무권한이 다른 법령에서 부여될 수 있어 **대통령령만 고쳐도 수사권을 줄 수 있음**. 통보의무, 입건요청권, 중수청 수사 중 사건에 대한 검사의 광범위한 의견 개진권, 중수청의 우선수사권 등을 종합하면, **중수청이 사실상 공소청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하는 구조라 공소청은 중수청을 통해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음. **공소청 검사가 특사경을 지휘할 수 있어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이 열려있음.
* 공소청법안 제4조제9호는 **직접수사를 염두에 두고 숨겨둔 규정**

□ 본 규정은 **민·상법 등 타 법령에 산재한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포괄적 근거인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수사권 우회 확보 또는 부활을 의도하고 **신설하거나 은닉해 둔 규정이 아님**

* 검사의 공익 대표자로서의 직무 예시 : 민법상 검사의 직무(친권, 입양, 후견 등 가족법 분야에서의 검사의 청구에 따른 비송사건), 상법상 검사의 권한(회사 해산명령 청구) 등

<공소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현행 「검찰청법」	공소청법(안)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경제범죄 등 / 나. 수사기관 공무원 범죄 / 다. 관련 인지 범죄	**1.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신 설>	**2. 영장 청구·집행 지휘**
<신 설>	3.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4.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5.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6.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7.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신 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법령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사항**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검사에 대한 통보 의무, 입건요청권 등을 통해 공소청이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확보하려는 것 아닌지?

* 통보의무, 입건요청권, 중수청 수사 중 사건에 대한 검사의 광범위한 의견 개진권, 중수청의 우선수사권 등을 종합하면, **중수청이 사실상 공소청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하는 구조라 공소청은 중수청을 통해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음.

□ 해당 조문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적 쟁점이 첨예한 중대범죄 수사에 대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간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며 마련한 규정임

- (3·4항) 중수청은 **입건 후 통보**를 통해 **최소한의 정보만 KICS를 통해 공소청에 제공**하고, **필요시 유예가 가능**하며, 공소청은 중수청이 **제공한 정보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 (5항) **송치 전 상호 의견제시**는 '**국가기관 간 엇박자' 방지**를 위한 장치로, **임의 절차이며 기속력이 없어 지휘권으로 볼 수 없음**
- (6항) **입건요청 제도**는 검사가 더 이상 수사개시를 할 수 없으므로, **범죄대응 공백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규정임

<중수청법>

제45조(검사와의 관계) ③ 수사관은 중대범죄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개시 경위 및 수사경과 등 수사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수사관은 수사 사항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수사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 사항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소멸하거나 강제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범죄의 태양(態樣), 규모 또는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와 수사관은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혐의에 대한 의견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검사는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 입건을 요청할 수 있다.

9. 공소청이 과거처럼 인력·예산을 하나도 줄이지 않으면서 수사기능을 복원하려는 것 아닌지?

*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수사 범위 축소(6대→2대 범죄) 당시에도 **검찰은 인력과 예산을 감축하지 않았음.** 이번 공소청법 역시 직접수사권이 전면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청법」의 조문 체계와 인력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과거처럼 인력 및 예산을 줄이지 않으면서 향후 **수사 기능을 우회적으로 복원**하려는 포석임

□ 공소청법 정부안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여 **공소청은 더 이상 수사개시를 할 수 없음**

ㅇ 법률에 의해 직접 수사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해짐으로써 수사권 우회 복원은 제도적으로 원천 차단되어 인력·예산 유지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님

□ 공소청 직원의 기소·공소유지·범죄수익환수·형집행 등 **형사사법 관련 업무 특수성 및 신분 보장 측면**에서 지위와 직무 내용 등을 법률로써 규정한 것일 뿐 보완수사권 유지·인력 유지 등과는 무관함

ㅇ 검찰청의 **직접수사 담당 인력은 1차적으로 감축안을 마련**하고, 인력과 예산의 **최종 규모는 향후 형소법 개정 논의와 연계**하여 실제 업무량과 수요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토·조정해 나갈 예정임

10. 공소청법 시행 시점에 수사중인 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모두 수사기관으로 보내는 것이 맞지 않는지?

* 법 시행일 전에 미리 검사가 수사개시한 사건을 넘기면 되고 **추가로 6개월 동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칙을 둘 이유가 없음**

□ **법 시행일에 수사기관으로 수사중인 사건을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며,

ㅇ 다만 '**진행 중인 사건**' 중 **공소시효 임박사건 등** 이송이 곤란하고 적시에 처리가 필요한 '**예외적**'인 사건만 계속 수사 가능하고, 그것도 **일정한 기간(6개월) 내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한 것임

<공소청법>

부칙 제5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소청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을 종결하여야 하며,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11. 검사의 정원·보수·징계 관련 법률은 검찰의 특권의식에 기반한 것이 아닌지?

* 검사의 정원·보수·징계 관련 법률은 **검찰이 법원을 흉내내기 위한 법으로 특권의식에 기반한 것**이므로 모두 폐지해야함
* 검찰청법상 검사는 일반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징계함. **똑같은 공무원인데 검사만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는지?** 정부안은 공소청 검사도 파면 징계가 가능하게 했지만, 여전히 별도의 검사징계법으로 징계하도록 함. **검사만 별도 법률로 징계토록 하는 방식은 형평에도, 공정에도 맞지 않음**

□ 국민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소권 및 헌법상 영장청구권 행사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임

ㅇ **대륙법 체계의 많은 선진국**(독일,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등) **역시** 검사 신분·보수 등을 **별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 **민주당 특위안도 검사의 정원·보수·징계에 대하여는 법률로 따로 정하도록 규정**

□ 또한, 특히 이번 제정안에는, **'징계 파면'을 도입**하여,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였음**

공소청법안(정부안)	공소청법안(민주당특위안)	국가공무원법
제45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적격심사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신분보장) 검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파면**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여 파면,**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는다.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징계파면 ㅇ **▲탄핵파면 ㅇ**	**▲징계파면 ㅇ** **▲탄핵파면 x**	**▲징계파면 ㅇ** **▲탄핵파면 x**

12. 공소청의 3단계 구조가 왜 필요한지?

* **검찰이 자신들이 법원과 같은 급임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 3단계 구조임. 현재에도 고검은 유휴 인력을 모아둔 곳인데, 수사권이 대폭 사라지는 공소청 체제에서 왜 고등공소청이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음.
  … 구조개편의 혼란이 걱정된다면, 법률에서 2단계 구조를 확정하고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조직개편 준비 기간을 주면 됨**. … 보완수사권 부여 등 권한의 문제는 추후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구조는 분명히 개혁해야 함
* 검찰이 3단구조였던 이유는 **수사 지휘를 하려는 목적**. 공소청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으로, **과거와 같은 상명하복식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음.** 기존 고검이 했던 항고·재항고와 국가소송 업무도 공소청이 담당하면 됨

□ 공소청이 **공소 전담 기관으로 전환**되어 **항소심 대응·공소 유지를 본연의 업무**로 하게 됨으로써 고등공소청의 중요성이 커졌음

* (고등공소청의 업무)
  - ▲ 심급에 따른 항소심 공소유지 및 국가소송 관련 소송지휘, 송달, 집행 및 구상권 행사 등 송무 업무 담당
  - ▲ 원처분에 관여하지 않은 객관적인 상급기관으로서 검사의 사무를 감사하고, 불기소처분을 재검토하는 항고 업무 수행

ㅇ 특히,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이라는 항고 제도의 성질상 원처분에 관여하지 않는 **고등공소청이 객관적인 상급기관**으로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검토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본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네덜란드** 등 대부분의 대륙법계 국가들이 **고검을 운영**하고 있고, 연방제 여부와는 무관함

□ 또한 정부는 이번 조직법안을 통해 **고등공소청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등공소청에 **사건심의위***를 구성·운영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였음

* ▲(의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해 심의
  ▲(심의사항)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여부**, **상소제기 여부** 등
  ▲(설치·구성) **고등공소청**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200명 이하 **사법제도 등에 학식·경험을 가진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

13. 검찰청의 인적 구성이 그대로 공소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 정부의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을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꾼 수준**이고 심지어는 **기존보다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기존 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관 전원을 그대로 공소청 공무원으로 이동**시킴. 검찰청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법사위 강경파 "**검사 다 자르고 재임용 심사**해야"(조선일보, 3.5일)
* **기존 검찰 수사인력 그대로 공소청 인력으로 남겨두어도 되는지**? 기관의 역할이 달라졌다면 사람과 업무체계 역시 바뀌어야 함. 조직문화도 결국 사람이 바뀌어야 없어짐. 신설 공소청 기능에 맞는 전문적 인력과 업무체계를 갖추어야 함

□ 정부 조직 개편시, 공무원 승계 간주규정은 **헌법상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근거한 것으로서, 모든 **조직 개편*** **시 공무원의 승계간주 부칙 규정을 두고 있음**

* `25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26년 1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로 분리

⇨ **해당 사례 외에도 정부조직 개편 시에는 공무원의 승계 간주 부칙을 두고 있음**

□ 기존 공무원 면직 후 재임용시,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 **침해,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검찰청법 제37조·국가공무원법 제68조) **위반** 등 **위헌·위법**에 따른 집단소송(행정·민사) 제기 예상, **전직 절차 마련 및 심의 지연 등 우려**

□ 해당 부칙은 검찰청의 '모든' 직원이 공소청으로 승계된다는 뜻이 아니라 중수청으로 **'이동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간주규정**임

ㅇ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직원에 대한 규정은 **중수청 법안**에서 별도로 규정

※ **김용민·박은정 의원안도 정부안과 동일하게 승계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14.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는데?

* 정부의 공소청법안에 의하면 **쿠팡 수사방해를 한 엄희준 지청장에 대항해 무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한 문지석 검사는 징계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뀐 것

□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청법」의 2004년 개정 시 복종의무가 삭제되고 이의제기권이 신설되면서 **이미 폐기 또는 완화됨**

▸ 서울고등법원(2014누45361)도 "검찰청법이 2004. 1. 20. 법률 제7078호로 개정되면서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 원칙을 규정하였던 검찰청법 제7조가 개정**되어 **검사동일체 원칙이 폐기**되거나 완화되어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으로 바뀌면서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신설**되었다(후략)"라고 설시

□ **정부안은 이러한 이의제기권을 그대로 보장**하는 한편, 이의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 대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검사의 독립적인 권한 행사를 더욱 강하게 보장하였음

* 쿠팡 수사에 관한 지청장의 무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한 검사에 대하여, 정부안에 의하면 그 이의제기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음

※ **민주당 특위안 및 김용민 의원안도 정부안과 동일하게 소속 상급자 지휘·감독 따를 의무, 검사의 이의제기권 및 불이익 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

<공소청법>

제7조(검사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제8조(검사의 이의제기권) ①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7조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검사는 이의제기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15.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한 것은 검사동일체의 근원?

* **공소청의 장은 공소청장으로 불러**야. 검사의 직급은 두 종류, 즉 검찰총장과 검사이며, 공소청장으로 명명하더라도 직급을 검찰총장으로 **보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헌법위반의 우려는 사라짐**.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정하면 모든 검사들을 지휘하는 **검사동일체의 근원임**
* 공소청법인데 '공소청장' 명칭이 어디에도 없음. **검찰총장 명칭은 계속 사용하되, 공소청의 장은 '공소청장'으로 하고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보하도록 하면 됨**
* 기관장 명칭을 검찰권 남용의 상징인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면, 국민들께서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바뀐 게 없다고 받아들일 수 있음. '공소청장'으로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취지와 상징성에 더 맞음**

□ 헌법상 명칭 변경으로 인한 **위헌 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ㅇ "본다, "보한다" 구조를 취하는 것 자체가 위헌성 논란 때문으로, 그렇게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명칭인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개칭**하는 것에 대한 위헌성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 **대통령님 신년 기자회견**('26.1.21일)
- 헌법에 검찰총장이 뭐한다. 검사가 뭘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버리면 됩니까

□ 검찰총장 명칭은 단순한 헌법상 명칭 유지일뿐 이미 폐지된 **검사동일체의 원칙과도 무관**함

16. 검사 직무의 위임 이전 및 승계 조항을 그대로 옮긴 것은 기존 제왕적 검찰총장제 남용의 우려가 있지 않은지?

* **윤석열의 제왕적 검찰총장제 남용의 대표 조항**이 전국의 검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사건을 옮길 수 있는 <**검사 직무의 위임 이전 및 승계**> 조항이었음. **표적수사**를 위해 울산지청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옮긴 **울산시장선거 하명수사사건**, **월성원전**을 대전지검에서 수사한 건, **문재인 전대통령 가족**에 대한 전주지검 수사 등 … 앞으로 수사권이 없는데 왜 걱정하나? 하는 반론도 있으나, 검찰이 수사권 욕심이 없다면 왜 저런 구태한 조항이 필요한지 도로 반문해야.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여전히 존치되어 있고 영장청구, 기소권 역시 막강한데 이 권한을 준다면 큰 폐단을 야기할 것

□ 공소청법상 상급자의 지휘·감독 및 직무 이전·승계는 **공소제기 및 구형 등에 있어서 전국 청 간 통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검찰권 남용을 내부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규정임

◆ **검사 직무 이전·승계 사례**
-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지적재산사건 등 **중점 청으로의 사건 이관** 또는 동일 청 내 **전문검사**에게 사건 이관
- 사건관계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검사 등 **공정성 시비가 있는 경우 사건 재배당**
- 검사 인사이동 또는 사직·휴직에 따른 사건 재배당

※ **김용민 의원안도 정부안과 동일하게 위임이전 및 승계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공소청법**>
제37조(검사 직무의 위임、승계 및 이전) ① 검찰총장, 각급 공소청의 장(이하 "각급 공소청장"이라 한다)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7. 공소청법안이 법무부 탈검찰화에 역행하는 법이다?

* 공소청법안 **제52조 검사의 겸임규정**은 제거되어야 함
* 검사의 법무부 겸임·겸직 규정은 검사가 **법무부 요직을 장악할 가능성을 열어주므로** 폐지해야 함

□ 공소청법은 기관의 존립 근거를 담는 '조직법'으로, **법무부 탈검찰화와 같은 인사 운영의 세부 방침**은 **인사 규정 정비** 등을 통해 다룰 사안임

ㅇ 법무부 탈검찰화 등 인사운영상 세부 방침은 **인사 규정 정비 및 점진적인 파견 축소** 등을 통해 검토

18. 여권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은 예외없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보완수사권 인정을 전제로 의견수렴 등 여론을 형성하는 것 아닌지?

* 의총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하고 정부에 전달하였음

□ **보완수사권 문제**는 **숙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논의과정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당정간 사전합의**가 된 사안임

□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ㅇ 현재 **당정간 합의된 순서대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개적인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숙의 과정을 거치는 중임**

◆ **대통령님 취임 100일 기자회견**('25.9.11일)
- 이후의 구체적으로 부실 수사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치밀한 장치가 필요, 이 장치에 대해서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정부가 주도하여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함. **그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모든 문제를 다 제거해야 함**

◆ **국무총리 국무회의 모두발언**('26.3.3일)
-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각오로 보완수사 관련 쟁점 등 남은 과제도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음

□ 그 과정에서, **예외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은 없는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실질적 작동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임

◆ **대통령님 취임 100일 기자회견**('25.9.11일)
-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게 맞다고 생각.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음. … 그런 경우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정도는 해 주는게 …

◆ **국무총리 인터뷰**('25.12.9일, 경향신문)
-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맞음.** 다만, **예외없는 원칙은 없음.** 전문적 수사의 필요, 공정한 수사 등 국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예외적 경우를 꼼꼼히 짚어보고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결론을 내려 함"

19. 형사소송법 개정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수사권이 인정되는 것 아닌지?

* 설치법과 절차법(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동시에 하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2026년 10월까지 검찰개혁 법안 완성하지 못하게 지연시키는 것임**

□ **형사소송법**도 **오는 10월**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임

◆ **김용민 의원 인터뷰**('25.7월, 뉴스1)

- **검찰개혁의 수사 기소 분리는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두 개의 단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 1단계는 검찰개혁과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조직법을 먼저 만들고요.** 그게 검찰개혁 4법입니다. 이 조직법을 만들고 **조직이 확정이 되면 이 조직을 운용하는 법, 다시 말해서 형사소송법이나 수사절차법 이런 법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법들은 그 유예기간 내에 만들어야 됩니다.**

20. 형사소송법 개정을 안 하면 검찰개혁은 한 발도 못 나가는 것 아닌지?

□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함께 조직법안을 토대로 **하위규정 마련, 관계법률 개정, 이체규모 산정, 중수청 개청준비단 출범 등을 준비**하고 있음

□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개정 내용에 맞춰 추가조정**함으로써 두 조직이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중임

21.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를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수사개시권을 폐지하더라도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수사-기소 분리가 아님**

□ 수사-기소 분리는 기관간 상호 통제를 통해 **확증 편향의 오류와 과도한 권한 집중에 따른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삭제**하고,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조직적·인적으로 분리**함

□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입장** 중에서도 수사기관 통제나 효율성 차원에서 **보완수사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분들이 있음**

※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이를 종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원칙 구현**이라는 입장, ▲보완수사를 포함하여 **일체의 수사를 금지**하는 입장 등 有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발언**('25.8월, 매불쇼)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그 수사를 경찰이 갖게 해야된다는 점은 다 **동의**함. 문제는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어서 진행되고 난 뒤에 검사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가인데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저도** 당연히 **제한된 조건 하에서 보완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2. 중수청 수사범위에 사이버범죄가 포함될 경우, 그 수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괴물 중수청이 되는 것 아닌지?

* 사이버범죄는 몇십만건, **아무거나 사이버로 다 붙일 수 있음.** 사이버범죄까지 포함해 중수청에서 수사를 대대적으로 한다면 **괴물 중수청**이 될 수 있음

□ 중수청은 **사이버범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온라인 사기, 명예훼손 등이 아니라 **국가주요기관 해킹,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인 중대사이버범죄를 담당하게 될 것임**

* 현재 **경찰**은 다수의 인터넷사기,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 **일반 사이버범죄 수사에 강점**, **검찰**은 기업·금융 범죄와 결부되거나 형사사법공조·범죄인 인도와 연계된 **중대 사이버범죄 수사에 강점**을 각각 보유하고 있음

ㅇ 현재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에서 악성프로그램 유포, 해킹 등 **중대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신설되는 중수청**에서 **중대사이버범죄수사에 집중**하도록 하여, **현재 검찰이 수행 중인 사이버범죄 수사의 역량을 이관**하고, 점차 **조직화·국제화**되고 있는 **사이버범죄의 추세에 대응**하는 등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처리 건수>

구분	총계	구속	불구속	약식기소
2021년	937	19	86	133
2022년	968	52	99	168
2023년	1,245	70	128	235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우수 수사 사례>

○ **(2023. 3분기)** 무허가 사설 선물거래시스템(HTS)을 운영한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수사 중 고객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 포착하여 프로그램 개발자 구속 기소

☞ 검찰 직접수사사건으로, **고난도 금융 사건과 결부된 대규모 사이버 범행을 적발**한 사례

□ **정부안**은 기존 9대 범죄에서 일부 범죄를 제외(공직자, 선거, 대형참사)한 **6대 범죄**로서, **기존 의원 발의안들에 비해** 대상 범죄의 수가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공룡 중수청으로 보기 어려움

민주당 발의안 : 8대	조국혁신당 발의안 : 7대	재입법예고안 : 6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마약, 대형참사, 내란·외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마약, 대형참사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23.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권을 모두 갖고, 별건 수사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중대범죄 수사 등이라고 해서 경찰 공수처 공소청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권을 정확하게 중수청이 다 갖고 있음**. 다른 기관에 대한 목숨줄을 진 거예요. 심지어 거기 다가 중대 범죄 수사를 하다가 발견되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다른 범죄도 수사. 별건 수사하라는 것임**

□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 직원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것은 **각 기관의 '셀프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

* 공수처는 검사, 경찰은 공소청·공수처·중수청·특사경·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 직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짐

ㅇ 또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경찰공무원, 공수처 소속 공무원 등이 범한 범죄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조직 분리**에 따라 **중수청으로 이관**한 것임

□ **관련 사건 인지 규**정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엄격히 운용**될 것임

대법원 2025도6707 판결

***'직접 관련성'**: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고(직접), 수사의 대상 또는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관련성)"를 의미

중수청법안

제2조(정의) 2. "중대범죄등"이란 중대범죄 및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공무원은 그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다. 중대범죄 및 가목·나목의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4. 공소청 공무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는 등, 공소청에 대한 견제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지?

* 권력분립 원칙은 사람의 선의를 믿지 않고 모든 권력이 부패한다는 것을 전제. 제도를 설계할 때에는 어느 정부와 상관없이 권력남용을 하지 않도록 권력을 나누고, **다양한 견제수단을 마련해야 함**. … **경찰의 공소청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이 박탈**되기도 했음. **정부가 바뀐다면 또다시 검찰독재 시대가 올 가능성**

□ 경찰의 수사 범위에 변동이 초래된 바 없음

- ㅇ **공소청 공무원**의 범죄는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범위**에 포함되며,
- ㅇ 특히 **검사에 대한 수사**는 **현행과 동일하게 공수처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공소청에 대한 견제가 약화될 여지는 없음

25. 중수청에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여, 모든 수사기관의 상위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것 아닌지?

□ 중수청의 **중대범죄 특화 전문수사기관**으로서의 특성과, 수사기관간 **중복수사로 인한 혼선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중수청에 이첩요청권을 인정할 필요**

- ㅇ 다만 해당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첩요청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공수처 수사범위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수처장이 이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ㅇ 이첩 요청 기준으로는 단순히 영장신청 여부 뿐만 아니라 **수사의 단서, 사실관계의 복잡성, 난이도, 관련사건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

* 이첩요청 기준을 '영장신청 선후'만으로 결정할 경우,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영장을 신청**하거나 **불필요한 강제수사를 남발**해 **인권침해 문제** 등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음

※ **민주당 특위안은 영장 우선 신청 수사기관에, 황운하 의원안은 중수청에 우선수사권을 인정함(정당한 사유에 의한 거부권도 인정x)**

중수청법안(정부안)	중수청법안(민주당특위안)	중수청법안(황운하의원안)
44조 ③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2조(수사의 경합) 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가 각각 다른 수사기관에 계속 중인 때에는 해당 범죄사실에 관하여 영장을 먼저 신청한 수사기관의 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첩요청을 받은 다른 수사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사건을 이첩하여야 한다.	30조 ③ 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수사청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제외한다)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6. 타 수사기관이 중수청에 입건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여, 중수청에서 사건을 선별해 우선수사하도록 하고, 공소청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 중수청은 저 **모든 수사 기관**이 수사하는 중대범죄를 그 통보를 받고, **범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 중수청은 저 수사는 내가 하고 싶어하면 보내, **우선수사권**이 있는 것. 중수청에서 수사개시를 하는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중수청법 45조에 따라서 수사 사항 통보**를 함. **상호 의견 제시라고 하지만 수사 지휘. 공소청 검사가 수사의 최고점, 대마가 되는 것**

□ 타 수사기관의 입건 통보 규정은 **중복수사와 인권침해방지**를 위해 **수사기관간 정보공유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임

- ㅇ 중수청이 타 기관으로부터 입건 통보를 받는다고 하여 **모든 사건을 중수청이 수사하는 것이 아님**
- ㅇ 중수청이 수사를 하기로 결정할 경우 **검사와의 관계 조문에 따라 일정한 수사 사항을 공소청과 공유**하게 되지만, **그 구체적 공유의 범위**는 **전체 수사기록이 아니라 중수청에서 결정한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되므로, **공소청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님**

27. 중수청의 수사개시 통보를 통해, 공소청이 모든 수사기관 혹은 수사를 통제?

* 국가 수사 본부는 그 검사에게 기본적으로 수사 개시를 통보하지 않음. 중수청이 수사개시를 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중수청법 45조에 따라서 검사에게 수사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상호 의견 제시라고 하지만 수사 지휘임. 국수본과 검찰은 저렇게 구조가 되어 있지 않고, 협력관계. 중수청을 만들어서 공수처와 국가 수사 본부가 중대 범죄를 즉시 통보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수사 기관들을 중수청이 관리하고 그리고 중수청으로부터 공수청이 보고를 받아서 실제 **공소청이 모든 수사 기관을 다 통제하거나 또는 그들로부터 중대범죄를 인지해서 자기 원하는 수사를 따로 할 수 있게 막강해지는 것**

□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체제**에서 KICS를 통한 중수청의 수사 통보는 **성공적인 중대범죄 수사를 위해 양 기관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규정**임

- ㅇ 일반 범죄와 달리 **중대범죄**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고난도 법리 분석이 필요**하여, **수사 초기부터 협력**할 수 있도록 통보 조항을 마련한 것임
- ㅇ 그럼에도 **중수청은 수사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공소청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일방의 수사지휘 관계가 아닌, 중수청과 공소청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수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협력하는 절차임

- ㅇ 중수청이 범죄자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법리 분석 등의 관점에서 조언**해 주는 것임

28. 검사와의 관계 조항을 통해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지휘?

* 중수청과 검사와의 협력관계 조문은 **상호 의견 제시라고 하지만 사실상 수사지휘**

□ **대등한 기관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의견 제시'이고 **임의적 절차로서 구속력이 없으므로**, 검사의 **과거 수사지휘 제도와 전혀 다름**

- ㅇ 공소청이 제시한 의견이나 입건 요청에 대하여 **중수청이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 수사의 독립성 보장
- ㅇ 또한 검사는 **중수청에서 제공한 정보 범위 내**에서만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조력자의 지위일 뿐 지휘자가 될 수 없음

29. 중수청법 부칙상 검사 임용특례규정이 이원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 **부칙에 이원화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또 남겨 두어서 굉장히 우려

□ 중대범죄 수사역량 유지를 위해 **중수청에 검사 등 법률전문가가 일정 부분 필요**하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원화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 재입법예고시 일원화 구조로 다시 설계함**

□ 수사관 1급부터 9급까지 **일원화 구조**에서는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사의 신분을 수사관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검사는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필요

※ **황운하 의원안도 검사의 수사청 공무원으로의 임용특례를 규정**

중수청법안(정부안)	중수청법안(황운하의원안)
부칙 제4조(공무원의 임용특례) ①2026년 10월 1일 당시 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검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계급의 수사관 2. 검찰직렬·마약수사직렬 일반직 공무원 및 해당 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 제15조에 따른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3. 제2호 외의 일반직 공무원 : 제13조에 따른 동일 직급의 일반직 공무원	부칙 3조(검사의 수사청 공무원으로의 임용특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검사를 수사청의 수사관으로 전직 임용하려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절차의 특례를 정할 수 있다.**

30. 중수청법안 부칙 제4조제6항에 봉급 보전조항은 검사가 수사관으로 임용되었을 때 차이 보전하려고 넣은 것?

* 중수청법을 왜 검사가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조항 있음. 부칙에 검사 봉급을 보전하도록 되어 있음. **검사가 수사관으로 가면 월급이 차이 나니까 차액 보전하는 규정을 꼼꼼하게 넣어놓음**

□ 해당 조항은 **이미 공직에 종사 중인 공무원의 신뢰보호 및 중수청으로의 원활한 인력 유입**을 위하여 필요한 조문으로,

ㅇ 방위사업법 등 봉급을 보전해 주는 **여타 입법례를 참고**하여 마련한 것임

◆ **관련 입법례**

- **방위사업법 <법률 제7845호, 2006. 1. 2.> 부칙 제14조 (특별채용 등의 특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봉급액이 특별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봉급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4916호, 2013. 12. 11.> 제3조(직종 변경에 따른 연봉 보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전문계약직공무원에서 별정직공무원으로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을 제외한 기본연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기본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중수청법안

부칙 제4조(공무원의 임용 특례) ⑥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의 봉급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임용되기 전의 봉급에는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 등을 고려한 인상분을 반영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